

#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(청탁금지법)

전주완산서초등학교

## 법률 적용대상

- 국가·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,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
- 공직자 등의 배우자
- 일반국민: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 등 제공한 민간인

## 부정청탁 행위유형

1. 인가·허가 등 업무 처리
2. 행정처분·형벌부과 감경·면제
3. 채용·승진 등 인사 개입
4.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·탈락에 개입
5. 공공기관 주관 수상·포상 등 선정·탈락에 개입
6. 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
7. 특정한 계약 선정·탈락에 개입
8. 보조금 등의 배정·지원, 투자 등에 개입
9.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
10. 학교 입학·성적 등 처리·조작
11. 질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
12.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업무 개입
13. 행정지도·단속 등 결과 조작, 위법사항 묵인
14. 사건의 수사·재판 등 개입
15. 1번~14번 유형에 대한 지위·권한 남용

## 불법 찬조금 금지

- 불법 찬조금, 학부모 금품수수, 촌지 등 일체 금지
- 학교 내 학부모, 학생이 제공하는 간식 일체 금지